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9. 16.

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# 검 토 보 고 서

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
(민원감사담당관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2022년도 제2회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05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9. 6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9. 6.

#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#### 가. 총 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2회추경 (안)	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	1차추경
계		747,709	693,262	622,602	58,654	12,006	54,447
일반회계		732,482	678,786	608,146	58,634	12,006	53,696
특별회계		15,227	14,476	14,456	20	0	751
	의료급여기금	803	636	636		-	167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642	291	291	-	-	351
	주차장	13,782	13,549	13,529	20	-	233

나. 일반회계

○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	2회추경(안) (B)
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
계	732,482	678,786	608,146	58,634	12,006	53,696
자체재원	152,213	152,546	152,546	-	-	-333
지방세	117,530	117,530	117,530	-	-	-
세외수입	34,683	35,016	35,016	-	-	-333
의존재원	486,836	485,541	426,907	58,634	0	1,295
지방교부세	23,828	23,828	23,305	523	-	-
조정교부금등	141,676	141,676	134,472	7,204	-	-
보조금	321,332	320,037	269,130	50,907	-	1,295
보전수입등	93,433	40,699	28,693	-	12,006	52,734
순세계잉여금	82,837	40,699	28,693	-	12,006	42,138
보조금사용잔액	10,596	-	-	-	-	10,596

○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	2회추경(안) (B)	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732,482	678,786	608,146	58,634	12,006	53,696	
일반회계	정책사업	539,124	498,656	486,069	58,149	12,006	40,468
	재무활동	20,189	6,631	6,631	-	-	13,558
	행정운영경비	115,601	115,931	115,446	485	-	-330

#### 4.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##### 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	산	액	기	정	액	2 회 추 경 ( 안 )		
								증	감	률
총	계		260,317,826		224,518,975		35,798,851		15.94 %	
민	원	감	사	담	당	관	176,525	185,729	△9,204	△4.96 %
소	통	담	당	관			3,368,418	3,368,418	0	0.00 %
행	정	안	전	국			150,259,258	148,494,233	1,765,025	1.19 %
	행	정	지	원	과		109,255,062	109,079,070	175,992	0.16 %
	자	치	행	정	과		14,771,276	13,409,109	1,362,167	10.16 %
	교	육	지	원	과		21,724,917	21,598,863	126,054	0.58 %
	주	민	안	전	과		3,351,366	3,286,262	65,104	1.98 %
	민	원	여	권	과		1,156,637	1,120,929	35,708	3.19 %
기	획	경	제	국			82,109,677	49,095,449	33,014,228	67.24 %
	기	획	예	산	과		40,427,487	18,236,653	22,190,834	121.68 %
	지	역	경	제	과		29,924,787	18,289,607	11,635,180	63.62 %
	일	자	리	청	년	과	10,119,000	10,898,460	△779,460	△7.15 %
	재	무	과				500,607	500,607	0	0.00 %
	세	무	1	과			463,001	458,028	4,973	1.09 %
	세	무	2	과			674,795	712,094	△37,299	△5.24 %
보	건	소					24,403,948	23,375,146	1,028,802	4.40 %
	보	건	정	책	과		5,133,403	5,257,926	△124,523	△2.37 %
	건	강	증	진	과		15,566,068	14,508,849	1,057,219	7.29 %
	의	약	과				3,031,289	2,937,311	93,978	3.20 %
	위	생	과				673,188	671,060	2,128	0.32 %

## 나. 민원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최종예산	기정액	2차 추경(안)
1	민원감사담당관	소통현장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	◦ 주요내용 - 현장구청장실 물품 구매 및 홍보물 제작 등 운영비	6,300	0	6,300

## 5. 검토의견

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결과

- 민원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본 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예산에서 920만 4천원이 감액 되었음.
-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
  -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이 6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출장여비가 1,550만 4천원이 감액 되었음
-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은 현장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 및 현장 순찰, 고충민원 처리 및 외부 기관 및 민간단체 소통체계 구축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### **지방자치법**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# **지방재정법**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, 타법개정]

**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**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 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